

## 제55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b>일 시</b>	2026. 2. 25.(수) 13:30
<b>장 소</b>	(춘천) 대학본부 303호 (삼척) 대학본부 304호
<b>참석인원</b>	16명(배석자 포함)
<b>참 석 자</b>	(춘 천) 우흥명, 오석훈, 이승환, 이종인, 조성자, 이보경, 김한규, 김 힘, 김동현, 홍진서(10명) (삼 척) 강종수, 윤은숙, 이현희, 유형민, 이성민(5명) ※ 위임장: 박종익, 유지성, 김상일, 류이수, 이지연(5명)
<b>불 참 자</b>	김형건, 박기철(2명)
<b>배 석 자</b>	기획처장
<b>회의순서</b>	1. 성원 보고 및 개회 2. 안건 관련 논의 3. 심의의결 결과 및 폐회선언
<b>상정안건 및 표결결과</b>	<상정안건>  (심의) 1.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표결결과> <b>원안가결</b> 3. 강원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표결결과> <b>수정가결</b>

## □ 성원 보고 및 개회

(대학평의원회 의장) 현원 22명 중 15명 참석, 4명 위임장 제출로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개최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금일 안건은 기타 행정조직 설치 규정 개정안과 사무분장 규정 전부 개정안 2건이며, 학칙 개정안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2건 있었습니다.

## □ 심의 관련 논의

(기획처장) 관련 안건 설명

(김힘 조교평의원) 지난 회의 때 졸업 증서와 관련하여 캠퍼스 명을 표기하는 게 아니라 캠퍼스 총장을 넣기로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번 회의 때는 학장, 캠퍼스 총장, 총장 순으로 표기하자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학평의원회 의장) 학생회 요청대로 표에 캠퍼스 총장을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었고, 문구를 어떻게 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동현 학생평의원) 강릉원주대에서 재심의를 요청하며 '심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평의원회 규정상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대학평의원회 의장) 평의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어 제출된 것은 충분한 논의에 의한 합의된 사항입니다.

(김한규 직원평의원) 재심의 요청이 여러 곳에서 온 것으로 아는데 어느 순간 안건이 2개로 축소되어 올라왔습니다. 다른 부서의 내용이 무시되고 교무과에서 보낸 두 가지 안건만 올라온 것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처장) 업무 처리 미숙으로 혼선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재심의 요구권자는 총장님이며, 여러 의견을 고려하여 총장님 승인을 거쳐 최종 2건이 공식적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대학평의회 부의장) 사무분장 규정안 중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나 방송대 협력 업무가 특정 캠퍼스에만 배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졸업장 캠퍼스 명 명기는 유사 중복 학과에 한해서만 하기로 합의된 사항인데, 이런 배경 설명 없이 평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보고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기획처장) 각 캠퍼스는 독자적인 업무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졸업장 표기는 캠퍼스 총장을 학위 수여권자가 아닌 표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라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법적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겠습니다.

(김한규 직원평의원) 단순히 교무과장 전결 공문이라 다시 보냈다는 설명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평의회 의원으로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 오늘 자리를 마지막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성민 삼척평의원) 통합은 특정 캠퍼스의 이해가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공감과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은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대학평의회 부의장) 규정상 평의회는 원안에 대한 수정 의결만 할 수 있지, 원안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집어넣는 것은 월권입니다. 졸업장 캠퍼스 명 명기 등이 수용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조치 등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수회 기능 중 캠퍼스 총장 관련 규정을 유지해야 향후 직선제나 선호도 조사를 논의할 민주적 근거가 됩니다.

(오석훈 교원평의원) 학칙 전부 개정안이므로 모든 사항을 논의할 수 있으며, 춘천 캠퍼스 부총장 선호도 조사 결과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하여 빨리 의견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학생평의원) 수정에는 조항의 추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평의회는 모든 구성원이 들어와 있는 심의 기구이므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형민 조교평의원) 캠퍼스 소속보다 통합 강원대학교로서의 자부심과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며, 4개 캠퍼스 구성원의 의견을 더 듣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평의원회 의장) 재심의 안건은 모두의 관심사이고 평의원 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의 종료 후 22명 전체 평의원을 대상으로 서면 결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강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심의

(대학평의원회 의장) 통합 대학 출범이라는 긴급한 일정을 고려하여 평의원회 규정 개정안 논의를 참석하신 평의원들의 동의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회 운영 규정은 확정된 학칙에 근거하여 체계를 맞추는 수준의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성 비율의 명시, 캠퍼스 배정 인원 산정 기준, 캠퍼스 평의원회(분회) 설치 근거 등 세 가지입니다.

(김힘 조교평의원) 배정 비율을 4년마다 재산정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규정에 '퍼센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생소하며, 인원수를 먼저 확정된 뒤 비율을 표기하거나 아예 명수를 적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학평의원회 의장) 학칙에 '재산정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주기가 없어 4년으로 제안한 것이며, 이는 총장 및 의장의 임기를 고려한 것입니다. 퍼센트 표기는 학칙의 '기존 구성 비율을 준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담기 위함이며,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는 지점이 있어 내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성자 교원평의원) 구성원을 30명으로 특정하면 퍼센트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하여 인원수가 딱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명 '이내'로 하거나 다른 유연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직원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승환 교원평의원) 상위법인 학칙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므로 우선 통과를 시키되, 세세한 문구 수정은 규정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대학평의회 부의장) 운영 규정은 대학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출범 3일 전에서야 논의하게 된 시기적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퍼센트가 아닌 명수를 확정하여 규정에 넣어야 하며, 인원 조정 주기 역시 2년 임기인 평의회 구성 주기에 맞춰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30명이라는 총원의 산출 근거가 되는 백데이터(통합 대학의 정확한 현원) 확인이 선행되어야 구성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학생평의원) 규정은 변동성이 큰 인원수보다는 학칙에 나와 있는 대로 비율로 적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낫다고 봅니다.

(대학평의회 의장) 30명이라는 수치는 현원을 기준으로 교원 50%를 보장하면서 나머지 직능의 숫자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소수점 문제는 학칙 근거를 준수하다 보니 발생한 것이며, 일단 30명으로 하되 비율은 100분의 단위(분수) 형태를 사용하여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캠퍼스 배정 인원 재산정 주기는 부의장님의 의견을 수용하여 2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대학평의회 부의장) 제12조(운영세칙)에서 각 캠퍼스가 세칙을 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이 없는 캠퍼스도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캠퍼스 분회장(또는 의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제4조에 명시해야 규정 간 충돌이 없습니다. 또한 춘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훈 교원평의원) 평의회 규정을 타 기구(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수정하는 것은 최고 심의기구의 위상에 맞지 않으므로, 규정심의회 수준의 자구 수정 외에는 평의회 결정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심의의결 결과 및 폐회선언

(대학평의회 의장)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과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대학평의회 의장) 학칙 개정 재심의 요구 2건에 대해서는 회의 종료 후 전체

평의원 22명을 대상으로 서면 결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서면결의 결과(22명중 21명 투표)

번호	평의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요구 사항	심의 결과
1	제28조(교수회 기능) ① 제26조제1항의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총장 및 캠퍼스총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	< 대학본부 심의 원안인 "총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환원> 제28조(교수회 기능) ① 제26조제1항의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총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캠퍼스총장 문구를 삭제)	재심의 요구 사항 원안 가결 ( 학칙 제28조 제1항 3 조항을 "총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2	제96조(졸업 및 학위) ⑥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때, 소속 캠퍼스명을 졸업증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졸업과 학위 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때, 소속 캠퍼스명을 졸업증서에 표기하여야 한다."로 심의 가결된 수정안을 삭제> 제96조(졸업 및 학위) ⑥ 그 밖에 졸업과 학위 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재심의 요구 사항 부결 ( 평의원회 심의 결과 유지 ) 제96조(졸업 및 학위) ⑥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때, 소속 캠퍼스명을 졸업증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졸업과 학위 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대학평의원회 의장)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의원 총원을 30명으로 증원하고 학칙에 따른 직능별 구성 비율을 명시하며, 캠퍼스별 배정 인원을 매 2년마다 재산정하고 캠퍼스 평의원회(분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대학평의원회 의장) 이상으로 제5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